

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7. 22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

1. 건 명 :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6. 7. 22.~2026. 8. 6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포항지방노동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(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, 3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527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포항지방노동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차지윤(☎: 054-288-35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7. 22.~2026. 8. 6.)

연 번	성함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최O공	'95. 8. 25	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512번길 10, 403동 508호	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	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○ 부정수급액 등 총 반환명령액: 1,518,000원	폐문부재 등

2026년 7월 22일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포항지청장

